

2019

# 경기도 규제지도

수도권 규제 / 팔당유역 규제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도권 낙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규제, 어느덧 3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누증(累增)하는 인구로 수도권 중심부의 불균형적인 과밀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경영 및 성장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어 산업은 노후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부와 북부지역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나 특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의 투자지연 및 국내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성장이 억제되어야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국내의 투자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져만 가고 있고, 특히 4차 산업으로 기존의 산업군과 가치창출의 패러다임이 현격히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만의 가치를 내걸고 있기에는 주변상황이 너무도 치열합니다.

반도체 등 몇몇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외에는 국가 간 기술격차도 좁혀지거나 역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일등석 승객이라 구분하고 배를 구하는데 배제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십년 간 추진되었던 고착화된 하향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규제 합리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019. 8.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유 계 영



## Contents

---

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03
경기도 중첩규제현황	08
경기도 중첩규제도	09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10
수정법상 권역별 규제현황	16
권역별 규제도	17
팔당유역 규제현황	27
팔당유역 규제도	2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도	35
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36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37
개발제한구역 현황	38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현황	39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40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41
수도권 규제 개선 진행 상황	42



# 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규제개혁담당관 규제개선TF팀장 박성구

## 1. 국내·외 여건변화와 최근 수도권정책의 현주소

### ■ 한국,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체제 돌입

최근 OECD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sup>1)</sup>」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3.0%, 2019년 3.0%를 전망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에서 2018년 3.0%, 2019년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에 따르면, 2018년 2.9%, 2019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표(2018.4)에 비해 각각 0.1%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7% 이후 3%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3.1%로 다소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3% 미만으로 하향세를 전망하고 있어,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저성장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DB는 아시아 지역 45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해 6.0%로, 내년 5.9%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6.6%, 내년 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무역긴장,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민간부채증대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을 진단하면서, 아시아 각국들이 구조개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충격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sup>2)</sup>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2008년 13위, 2014년 이후 4년간 26위 정체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 95위, “규제개선” 56위로 규제분야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세부평가 항목(“제도적 요인” 부분 중) 순위 변화

-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15년 97위, '16년 105위, '17년 95위
- 법체계의 효율성\_규제개선(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15년 74위, '16년 59위, '17년 56위
-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t policymaking) '15년 123위, '16년 115위, '17년 9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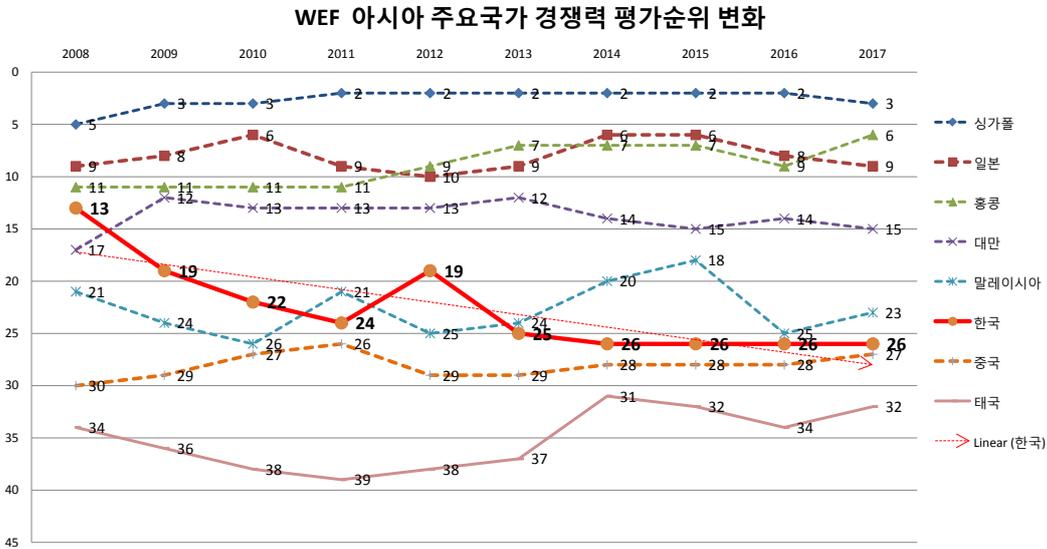
반면에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경쟁력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08년 5위 → '17년 3위), 홍콩('08년 11위 → '17년 6위), 대만('08년 17위 → '17년 15위), 중국('08년 30위 → '17년 27위), 태국('08년 34위 → '17년 32위)

1)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상 수정전망 발표

2) 「아시아개발은행(ADB), 2018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4.11.)

# 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그림 1] 「WEF 세계경쟁력 평가」, 최근 10년간 아시아 주요국가 순위변화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08~17)를 정리하여 도식화 함.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약세 등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 ■ ‘뉴노멀’, ‘선진국의 대도시권정책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저성장 양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The New Normal)시대’에 봉착하였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또한 각 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세계 경제는 향후 치열한 경쟁구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제조업 강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sup>3)</sup>’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이해(Mat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의제를 통해 앞으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

이렇듯이 ‘4차 산업혁명<sup>4)</sup>’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8.12. 인용).

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빈부격차, 노동시장 붕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3)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4)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함(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8.12. 인용)

위해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융합, R&D 투자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소재 및 부품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30.3%로 세계 평균 16.5%에 비해 상당히 큰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생산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되고 있어(현대경제연구원, 2016.7.1. 인용), 미래 산업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는 물론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제조업 부문 해외 의존도 : 2009년 13.9% → 2014년 18.5%

## ■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적 갈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징점을 계발하는 대도시권 중심의 신성장정책 필요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력강화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영국,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80 런던권 규제정책 폐지, 재도약을 위한 대도시권정책 전환  
프랑스, 199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인식, 2000년대 파리권·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진  
일본, 1985년 수도이전 실패, 2000년대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 2014년 국가전략특구 등 도입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004년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은 '정비발전지구'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등의 통합추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수도권 발전정책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낙후지역에서의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sup>5)</sup> 하였지만, 이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비수도권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 가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까지 약 3조 원을 납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현황(2018. 1.31. 기준)  
• 총 2조 9,881억 원(수도권 3개 시·도), 경기도 1조 3,825억 원

이제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대도시권 중심의 지역별 특징점을 계발하여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키워내어, 대도시권의 개발이익을 주변지역의 저발전·낙후지역의 지역발전에 재투자함으로써 고루고루 잘 사는 상생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5) 기획재정부, 2015.12.16.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2016년 경제정책방향」

# 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 ■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시책의 모순과 수도권에 대한 편견 고쳐야..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역사는 1964년 정부의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국무총리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에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때 수립된 ‘규제의 틀’이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77)」, 「수도권정비계획법(82)」의 근간이 되었고, 그 규제의 대상과 구조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까지 정부가 계획하는 수도권의 범역은 서울도심 반경 “35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북쪽으로는 동두천시 이남 지역, 남쪽으로는 수원시, 동쪽으로는 하남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서울 전지역과 인천시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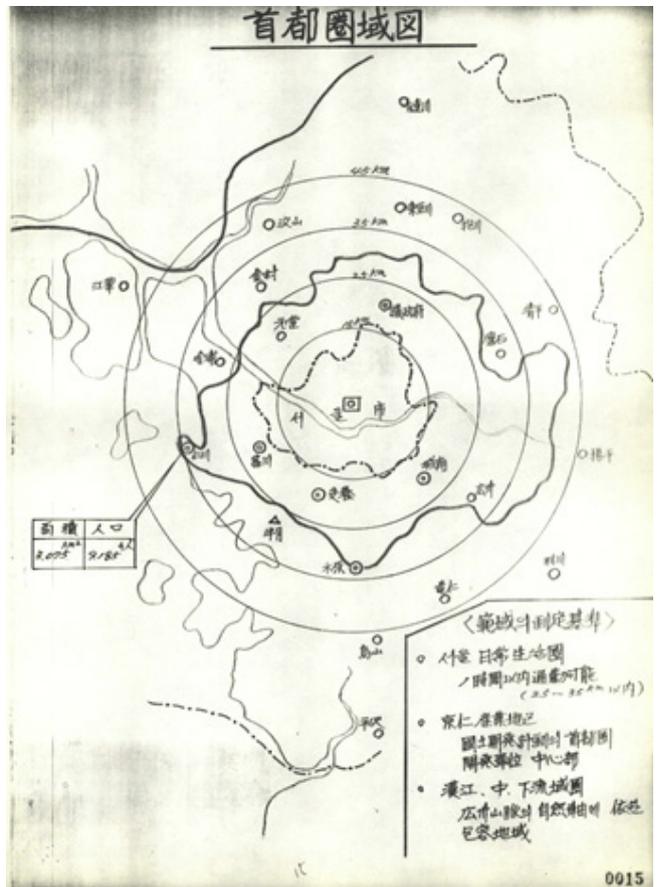
그러나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84.7.11)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범위가 현재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시선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과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수도권 인구의 75%는 서울·인천 및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밀억제권역(전 국토의 2%)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37%(약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 ※ 수도권 주민등록인구현황(2017년)
  - 서울특별시 9,857천명(전 지역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2,948천명(일부지역 과밀억제권역)
  - 경 기 도 12,873천명(과밀억제권역 6,820천명)

반면, 수도권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8개 시·군, 3,830km<sup>2</sup>, 서울면적의 6.3배)에서는 전국 인구의 단 2%에 불과한 인구(118만명)만이 살고 있는, 지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낙후지역이며, 인구밀도는 293 인/km<sup>2</sup>으로 전국평균 514 인/km<sup>2</sup>의 절반수준입니다.

결국,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제 과밀화된 곳에서는 여전히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낙후지역에서는 수도권규제가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2] 최초의 수도권지역 범위

- ※ 〈範域(범역) 기준〉
  - 서울 일상생활권 1시간이내 통행가능(25~35km 이내)
  - 경인산업지구
  - 한강, 중, 하류 권역  
광주산맥의 自然軸(자연축)에 의한 包容地域(포용지역)

자료 : 1977.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

## 2.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정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언

앞서 설명한 '자연보전권역'은 전국에서 경기동부지역에 유일하게 지정된 규제지역으로서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 산업규제, 군사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중앙부처마다 각각의 법률로서 2중·3중의 중복적인 환경분야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술 및 제도적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전의 단순 입지·규모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환경을 관리해야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개별입지공장의 소규모 난개발이 진행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국토관리·산업효율화 차원에서 산업입지정책 개선 시급

경기도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의 국토와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범위 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하는 정당한 목적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한 데 모여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합의과정을 제안합니다.

####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면적제한(6만㎡ 이하)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규모 있는 산업용지를 조성함으로써 개별입지공장의 집산화(또는 신규)를 유도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적절히 확보
  - 산업단지조성사업 50만㎡,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조성사업 30만㎡, 준계획입지 내 공장용지조성사업 10만㎡로 확대하되, 기타지역 안에서는 현행 규정 유지
  - ( \* 준계획입지 : 개발진흥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 계획입지 또는 준계획입지로 집산화된 공장을 대상으로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1천~3천㎡)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하고, 건축제한(업종 등)을 일부 완화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공업지역 및 준계획입지의 경우 각각 차등하여 완화, 기타지역은 현행 입지규제 유지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준계획입지를 지정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인접한 2개 이상 사업장의 용지면적을 합산하여 규제) 적용 배제
- 규제개선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할당부하량 및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총량범위 외 추가적인 산업시설의 증가를 제한할 것
- 팔당상수원 및 상류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업종공장 등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를 억제하며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별입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입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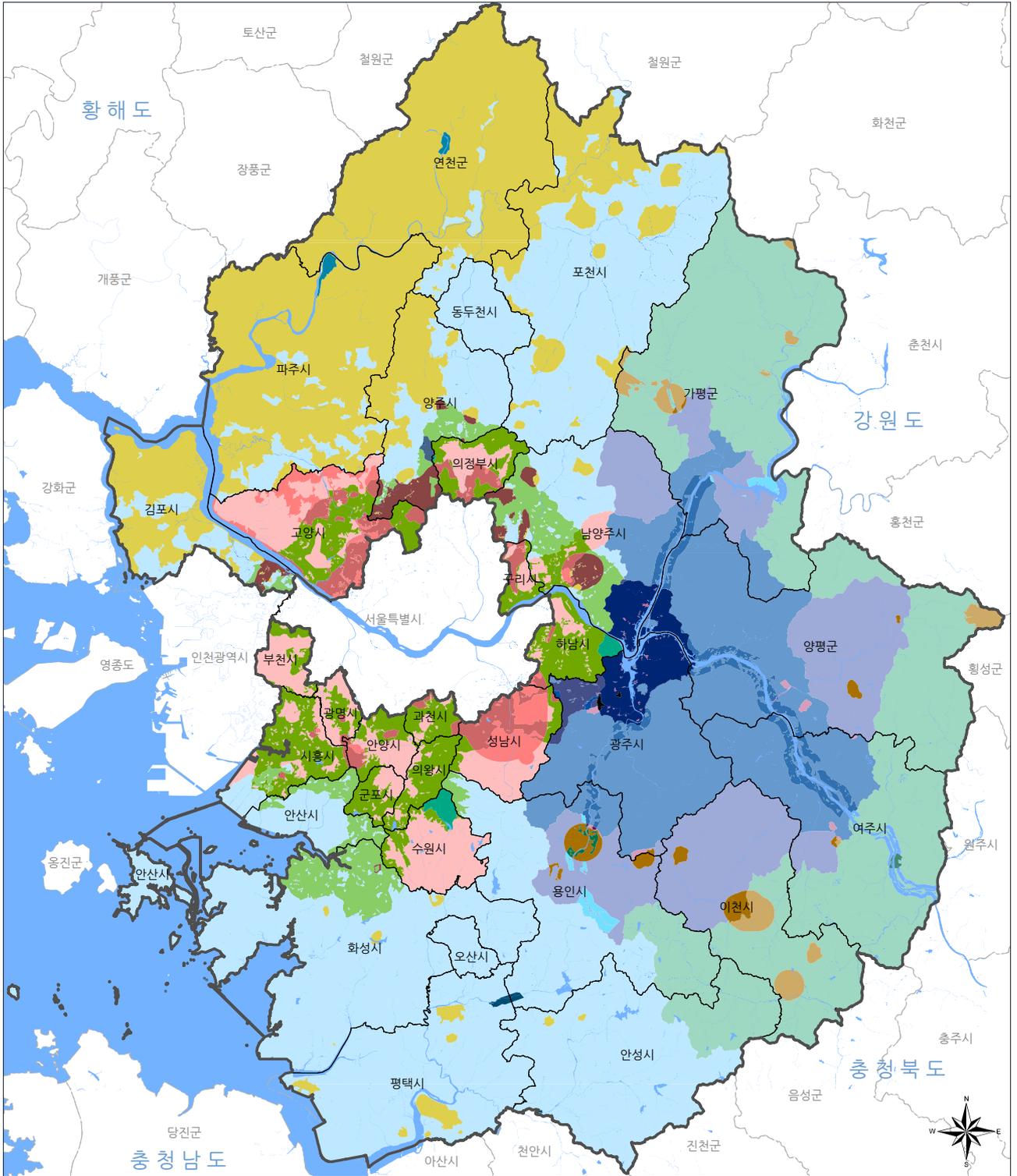
#### 〈참고문헌〉

-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
-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81~1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EF 세계경쟁력 평가결과」(08~1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2018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 조영무. 2016.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 연구」
- 현대경제연구원. 20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 현대경제연구원. 2016.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 경기도 중첩규제현황

규제분야	경기도 규제 현황
수정법	<p><b>【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법(시행령 제2조) 적용지역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1,856km<sup>2</sup>(전국 11.8%) (경기 10,188km<sup>2</sup>(수도권 86%), 서울 605.2km<sup>2</sup>(5%), 인천 1,063.1km<sup>2</sup>(9%))</li> <li>※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li> </ul> </li> </ul> <p><b>【주요 규제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li> </ul>
팔당특별 대책지역	<p><b>【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당특별대책지역 : 도내 7개시·군 2,097km<sup>2</sup>(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 592km<sup>2</sup>, 광주 431km<sup>2</sup>, 여주 248km<sup>2</sup>, 이천 233km<sup>2</sup>, 용인 207km<sup>2</sup>, 남양주 195km<sup>2</sup>, 가평 191km<sup>2</sup></li> <li>※ 7개시·군 전체면적(4,271km<sup>2</sup>)의 49%</li> </ul> </li> </ul> <p><b>【주요 규제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유도선업,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원칙적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권역, II 권역별, 사업별로 제한적 허용</li> </ul> </li> </ul>
군사시설 보호구역	<p><b>【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면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239km<sup>2</sup>(도 전체면적의 22%, 서울 전체면적의 3.7배)</li> <li>●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1,793.7km<sup>2</sup>(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 연천 94.7%, 파주 89.2%, 김포 72.2%</li> <li>※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km<sup>2</sup>)보다 큼</li> </ul> </li> </ul> <p><b>【주요 규제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 원칙적으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li> </ul> </li> </ul>
개발제한 구역	<p><b>【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GB 면적 : 3,846km<sup>2</sup>(전 국토면적 100,378km<sup>2</sup>의 3.8%)</li> <li>● 경기도 GB면적 : 21시군 1,166.977km<sup>2</sup>(도 전체면적의 11.45%, 서울 전체면적의 2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의 30%</li> <li>※ (GB%) 의왕 84.6%, 과천 82.9%, 하남 77.3%, 의정부 70.3%, 시흥 62.4%, 군포 62.4%</li> </ul> </li> </ul> <p><b>【주요 규제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li> </ul>

# 경기도 중첩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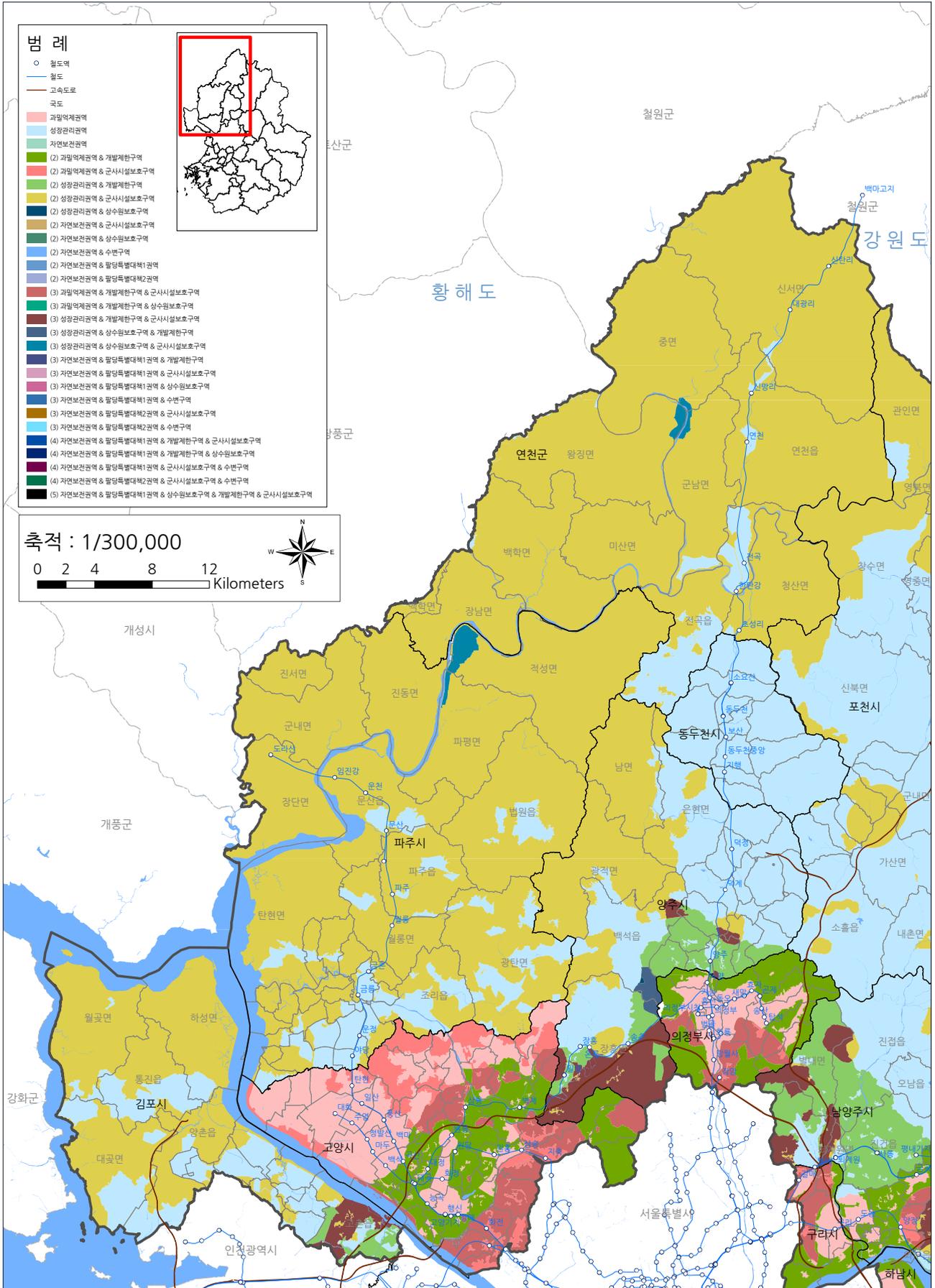
## 범례

축척 : 1/750,000

- |                                                                                                                                              |                                                                                                                                                          |                                                                                                                                                                             |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f08080; border:1px solid black;"></span> 과밀억제권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add8e6;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80008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add8e6; border:1px solid black;"></span> 성장관리권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4682b4;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8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90ee90; border:1px solid black;"></span> 자연보전권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6a5acd;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8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32cd32; border:1px solid black;"></span>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c71585; border:1px solid black;"></span>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ff450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8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90ee9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8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ffff0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4682b4;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8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000000; border:1px solid black;"></span>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span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5px; height:15px; background-color:#800080; border:1px solid black;"></span>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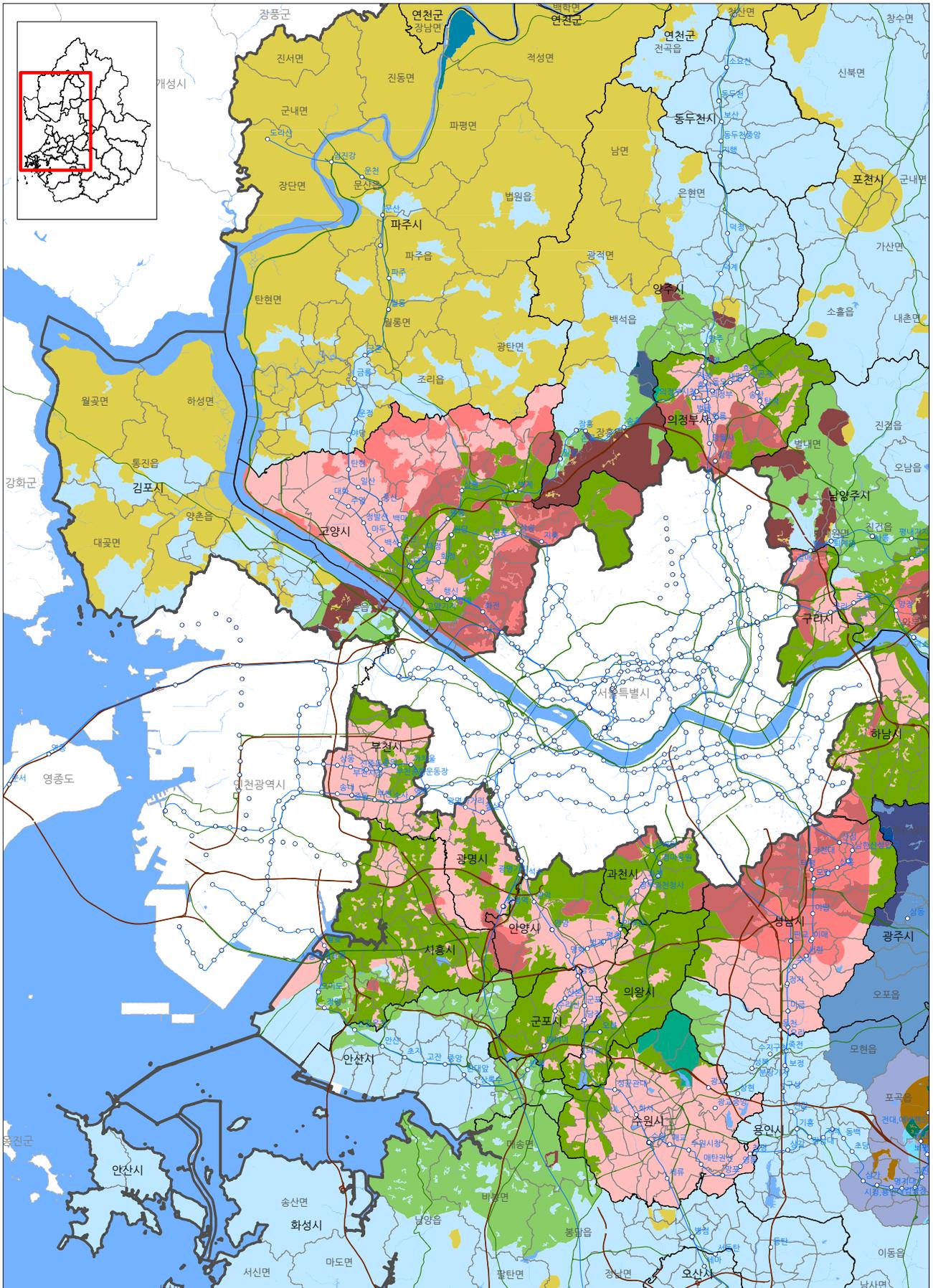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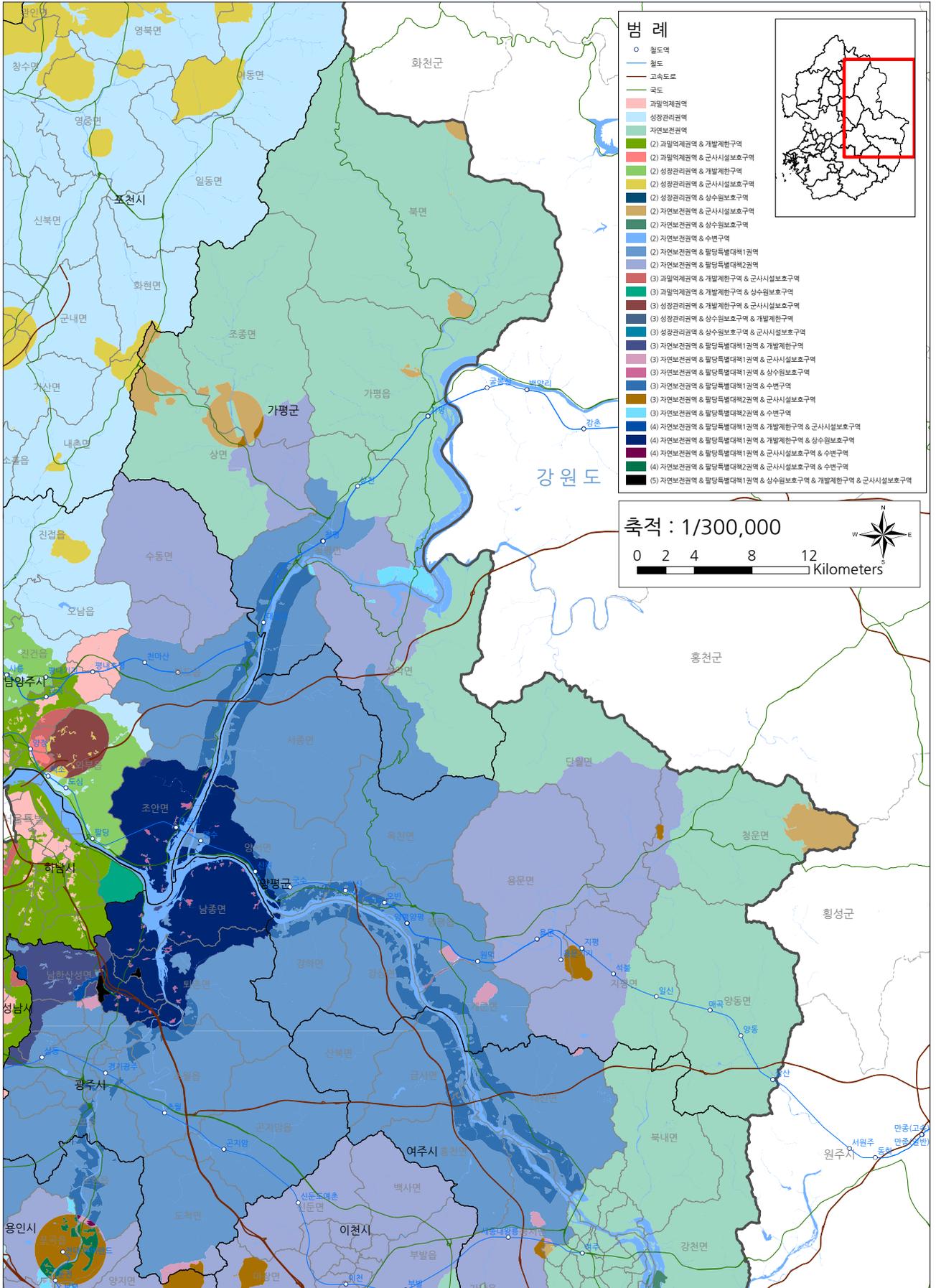
#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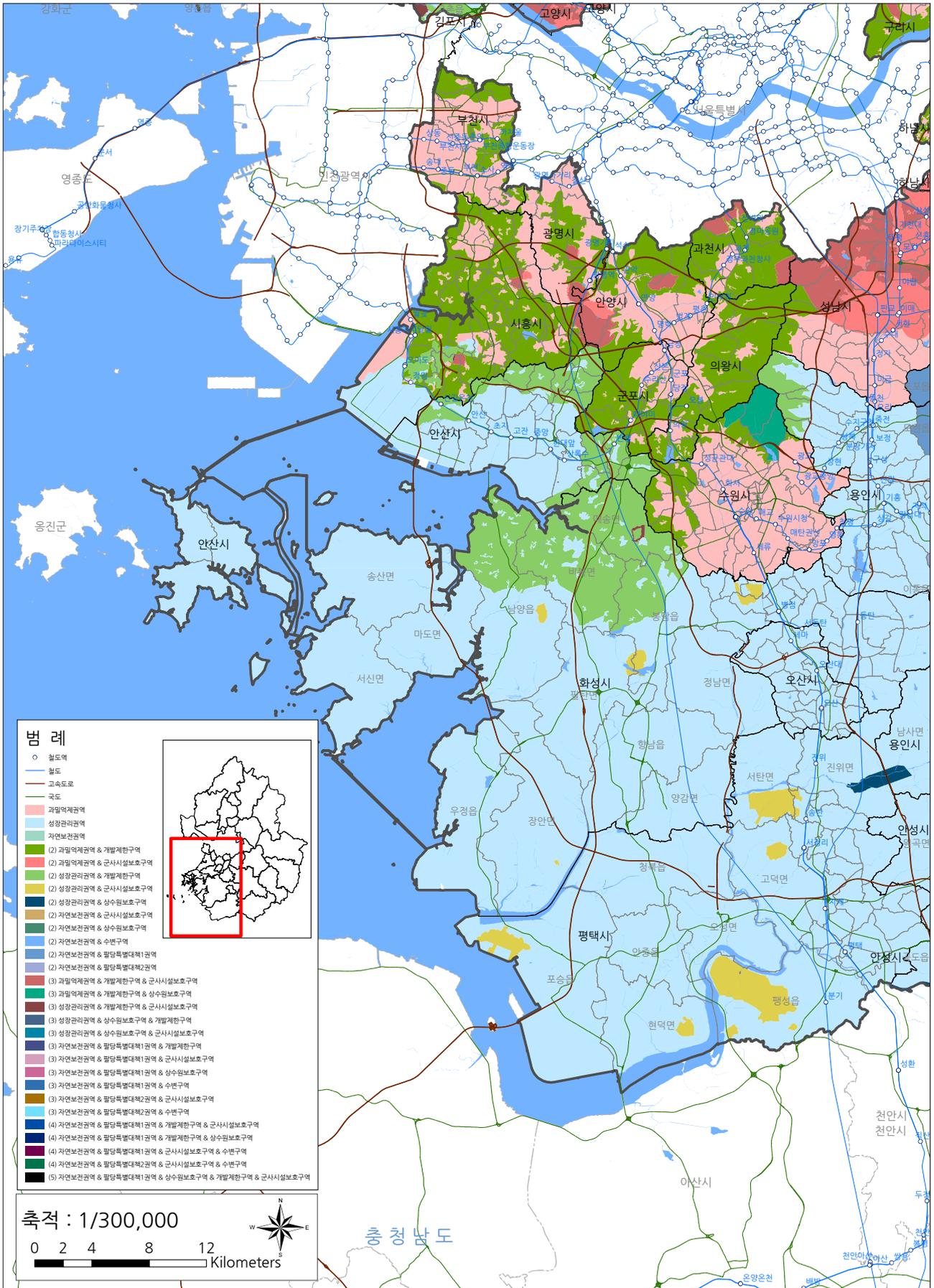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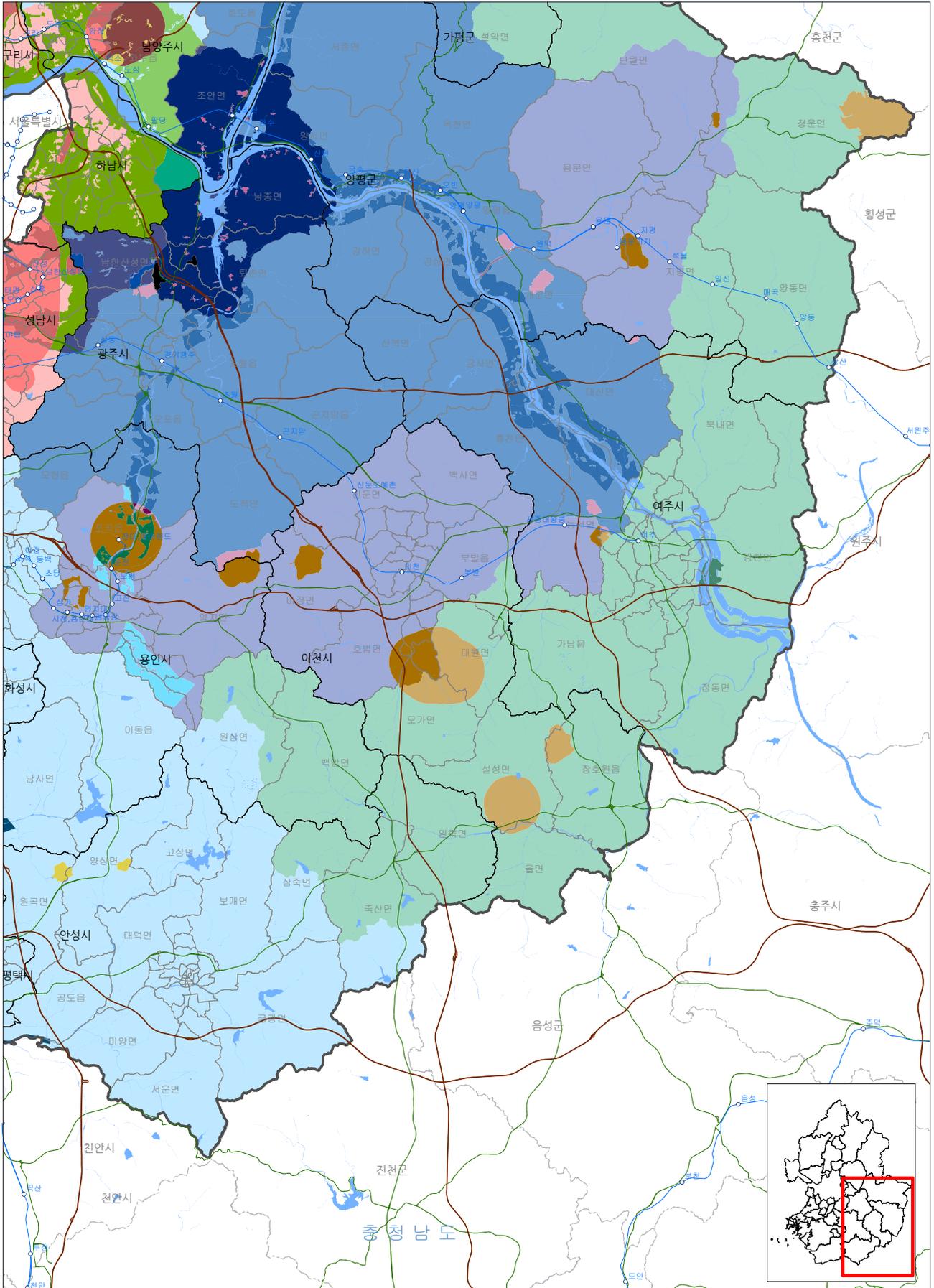
#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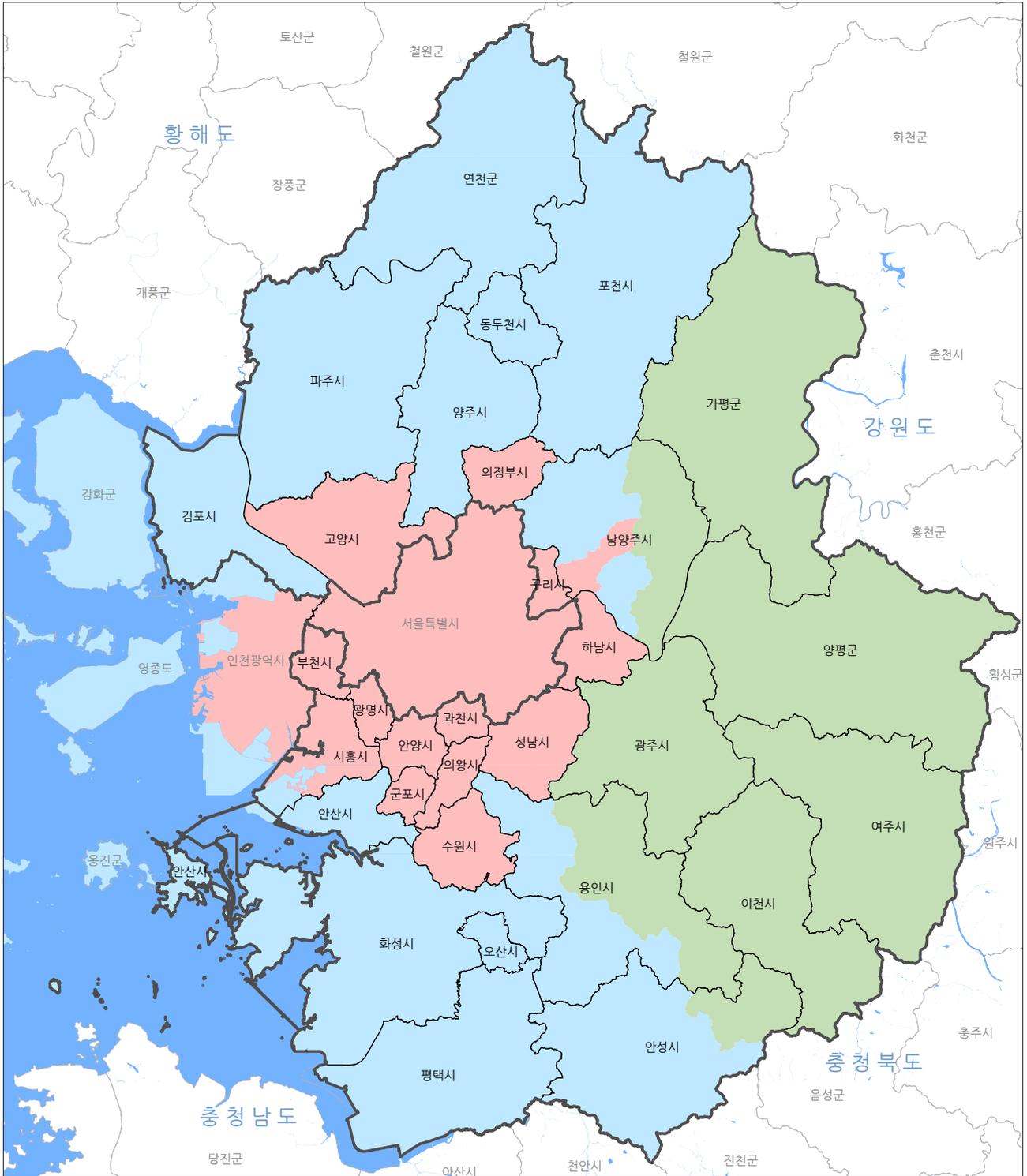
# 수정법상 권역별 규제현황

[2018.12.31. 기준]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1,307.7만명)		685.8만명(52.4%)	500.4만명(38.3%)	121.5만명(9.3%)	
면적(10,187.8km <sup>2</sup> )		1,167.95km <sup>2</sup> (11.5%)	5,189.84km <sup>2</sup> (50.9%)	3,830.0km <sup>2</sup> (37.6%)	
해당 시·군		<b>14개 시</b>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b>14개 시·군</b>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b>8개 시·군</b>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업지역(산단) 지정		<b>금지</b> (대체지정시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 30만㎡ 이상 추가 심의 후 허용	<b>가능</b>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b>가능</b> (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 없이 산업단지 지정 (6만㎡ 이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공장기준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단, 사무실·창고 제외)			
	대학	신설	<b>금지</b>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 이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b>금지</b>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소규모대학(50인 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 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b>금지</b> ※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 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 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이전	<b>가능</b> 과밀→과밀 <b>※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b>	<b>가능</b> 수도권→성장	<b>금지</b>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 이하)에 한하여 권역 내 이전 가능
	증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형 건축물	(건축연면적 기준)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 이상의 규모일 경우			
	연수시설 (연면적 3만㎡ 이상)	<b>금지</b>	<b>심의 후 허용</b> (이전·기존 20%내 증축 가능)	<b>심의 후 허용</b> (기존시설 10%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구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공동	<b>금지</b>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 미만 사업 가능
			도시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 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 미만의 구역 내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 후 허용
	도시개발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 미만의 사업중에서 공업용도가 30만㎡ 이상인 사업 심의	공동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b>(6만㎡ 초과~10만㎡ 미만의 사업은 금지)</b>
			도시	1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 미만의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3만~6만㎡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 수정법 상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녹지지역 제외)과 개발진흥지구를 포함	

# 권역별 규제도



## 범례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축적 : 1/750,000



#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참고 1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 현황

[2018.12.31. 기준]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목적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 주민불편 해소
인구(1,307.7만명)		685.8만명(52.4%)	500.4만명(38.3%)	121.5만명(9.3%)
면적(10,187.8km <sup>2</sup> )		1,167.95km <sup>2</sup> (11.5%)	5,189.84km <sup>2</sup> (50.9%)	3,830.0km <sup>2</sup> (37.6%)
해당 시·군		<b>14개 시</b>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b>14개 시·군</b>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b>8개 시·군</b>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지역(산업단지) 금지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지 지정(6만㎡이하)</li> </ul>
	완화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산업단지 공급물량 외 별도 공급</li> </ul>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공급계획 수립</li> <li>다음의 경우 수도권산업단지 공급물량의 30% 내에서 추가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입지공장의 집산화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li> <li>- 기존 도심권 또는 개별입지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li> </ul> </li> </ul>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li> <li>- GB해제 지정 주택지구에서 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지구 또는 그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지정 가능(기존 공장·제조업소 부지면적 범위 내)</li> </ul>	해당없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특례 제15조 (공장 신설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 신설·증설 특례</li> <li>-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신·증설 가능(공장총량 별도 공급)</li> <li>-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생략</li> </ul>		해당없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 제25조 (공장 신설 특례)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 신설·증설 특례(평택시)</li> <li>-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신·증설 가능(공장총량 별도 공급)</li> <li>-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생략</li> </ul>	해당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중 미국이 반환한 구역</li> <li>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공여구역제외)</li> </ul>		

## 참고 2 수도권 공장입지 행위제한 현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제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의 신·증설, 이전 및 업종변경이 원칙적 금지(법 제20조)</li> <li>• 공장총량제 : 공장 신·증축, 용도변경은 매년 시도별로 설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설정범위 내에서 건축가능(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2015년~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국토부고시 제2015-182호)</li> </ul>						
과밀 억제 권역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신·증설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유치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sup>1)</sup> 3천㎡내 증설</li> <li>•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증설</li> <li>•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이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sup>2)</sup>기존공장 200%내 증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기존공장 100%내 증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sup>3)</sup>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sup>4)</sup>(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공장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첨단업종)공장 신·증설(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li> <li>• 도시형(첨단업종)공장 신·증설</li> </ul>	
성장 관리 권역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신·증설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유치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3천㎡내 증설</li> <li>•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신·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기존공장 증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기존공장 200%내 증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자재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5천㎡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자재업종공장 신·증설(최종 5천㎡내)</li> </ul>	-	
자연 보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기타지역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도시형공장 중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에 적합 인정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sup>5)</sup>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내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공장 1천㎡내 증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공장 신·증설 (최종 3천㎡내)</li> <li>• 기존도시형공장 3천㎡내 증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공장 신·증설 (권역 적합 공장 중 최종 1천㎡내)</li> <li>• 기존도시형공장 3천㎡내 증설</li> </ul>
비고	<p>※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보충자료 참조)</p> <p>1) 기존공장 : 대통령령 제21267호(2009.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p> <p>2) 첨단업종공장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시행령 제2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5조(별표 5))</p> <p>3) 현지근린공장(시행규칙 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표 1의2 :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li> <li>- 시행규칙 별표 2 : 자원재활용업종</li> <li>- 시행규칙 별표 3 :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li> </ul> <p>4) 도시형공장 : 법 2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2호(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p> <p>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장(시행규칙 제16조 :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li> <li>-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 이하인 공장</li> </ul>						

#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보충자료 권역별 공장의 행위제한 세부내용(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시행령 제26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p>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p>
3. 기타지역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li> <li>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li> <li>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li> <li>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li> <li>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li> </ol> <p>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p> <p>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 중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p> <p>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p>

## 비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lt;개정 2010.11.19&gt;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교란과 같다.

#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1.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p>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p>
3. 기타지역	<p>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한다.</p> <p>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p> <p>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비고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교란과 같다.

참고 3 수도권 권역별 대학규제 현황(「수도권정비계획법」)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	서울 이외			
신설	4년제대학·교육대학	금지 (심의회 간호전문대 → 4년제 간호대 가능)	금지	금지	금지
	소규모대학	금지	금지	심의회 가능	심의회 가능
	대학원대학	가능	가능	가능	심의회 가능
	산업대학	금지	가능	가능	금지
	전문대학	금지	가능	가능	심의회 가능
이전 (전입)	4년제대학·교육대학	심의회 서울내 가능	심의회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금지
	소규모대학	심의회 서울내 가능	심의회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대학원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금지
	전문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특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경기도 102읍면동) (과밀·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대학의 이전, 증원 가능(수정위 심의)</li> <li>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li> <li>※「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2</li> </ul>			해당없음
	평택시 (성장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대학 이전, 증원 가능</li> <li>국제화계획지구에 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li> <li>※「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li> </ul>			해당없음
	경제자유구역 (과밀·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li> <li>※「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li> </ul>			해당없음

• 입학정원(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의 증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총정원 범위내에서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자율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총수는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증가 총수의 10%이내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 (단, 10%초과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 전체에서 300인 이내(첨단 전문분야 제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 (단, 300인 초과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정원은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함

#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참고 4 수도권 산업단지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현황

근거	지원대상	지원율 (%)			비고
		비수도권	수도권		
			비접경지역	접경지역*	
법 제28조 (비용의 보조)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비	50%	50%	50%	국·지방비
	단지내 녹지시설 건설비	50%	50%	50%	
	용수공급시설	50%	50%	50%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100%	50%	100%	
	이주대책사업비	50%	50%	50%	
	임대산단의 용지매입비, 공원·공동구 건설비	50%	50%	50%	
	지식산업센터 용지매입비	50%	50%	50%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기반시설(진입도로 등), 용지매입비	50%	50%	50%	
문화재 조사비	100%	50%	100%		
법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시행령 제27조 (기반시설 지원)	지원(진입)도로	100%	0%	100%	국비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용수공급시설	100%	0%	100%	국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항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지원근거 주요내용

- 법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영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비용보조의 대상(위 표와 같음)
  - ② 50% 범위안에서 보조 가능 원칙. 단,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 거쳐 전액 보조할 수 있음(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낙후지역 개발
    -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매입(접경지역 외의 수도권지역 제외)
    -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
- 영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2.11.20.>
  - \*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제1호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7만㎡ 이상
  - \*\*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 ② 제1호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15만㎡ 이상
- 법 제29조(시설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대상
  - 30만제곱미터 이상(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 지침 제15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 일부(국비지원 15만㎡이상, 지방비지원 3만㎡이상 등)
  - ② 지원대상 제외
    -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
    -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산업단지(일반·도시첨단)
    -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접경지역 제외)
      - 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참고] 접경지역 :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참고 5 수도권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 시 부담금 등의 감면 또는 역차별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시행령 제47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지<sup>1)</sup>에서 민영주택 건설 공급 시 건설량의 50/100(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30/100)의 범위 내 특별공급</li> </ul> </li> </ul>		
	<p>【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조성시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0%지원(단, 접경지역 100% 지원)</li> <li>•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시 지원(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100%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 안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후 국비 100% 지원(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 지원(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100%)(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의2)</li> <li>※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및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100% 지원</li> </ul> </li> </ul>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용지(중소기업), 산업·관광·물류단지 조성사업 시 개발부담금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7.15.~2018.6.30.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 (법 제7조의2 임시특례)</li> <li>- 수도권 시행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50% 감면</li> <li>- 수도권 외 지역 시행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li> </ul> </li> </ul>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사업 위한 시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23조[별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외 사업장 면적 1천㎡미만 소기업 신·증축·이전 시 부담금 전액 면제</li> <li>※ 다만,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2018.6.30.까지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2016.6.30.개정(한시적 감면))</li> </ul> </li> </ul>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조성사업 시 대체초지<sup>2)</sup>조성비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16조의3)</li> </ul>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조성,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관광지·관광단지, 국제회의업 시설용지 조성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52조[별표2])</li> <li>• 건설임대주택 사업용지 :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외 사업장 면적 1천㎡미만 소기업 신·증축·이전 시 부담금 전액 면제</li> <li>※ 다만,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2017.1.1. ~ 2018.12.31.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은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시행령 제52조 [별표2], 2016.6.30.개정(한시적 감면))</li> </ul> </li> </ul>		
※ 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가능</li> <li>• 공여구역주변지역등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li> <li>-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li>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li> <li>-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접경지역에 한함)</li> <li>-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li> </ul> </li> <li>•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회사 설립 또는 공장 이전 시 조세 감면</li> </ul>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단지 :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 등을 위한 단지(산업입지법 제46조의2)</li> <li>2) 초지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초지법 제2조제1호)</li> </ol>		

#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참고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현황 : 10,187.79km<sup>2</sup>(도 전진역)

[2018.12.31. 기준]

권역	시·군	면적(km <sup>2</sup> )		인구(명)		비고	
		10,187.79	(%)*	13,077,153	(%)*		
과밀억제권역	계	1,167.95	11.5	6,857,999	52.4		
	남부	소계	738.17	7.2	4,969,002	38.0	
		수원시	121.04	1.2	1,201,166	9.2	
		성남시	141.64	1.4	954,347	7.3	
		부천시	53.44	0.5	843,768	6.5	
		안양시	58.46	0.6	576,831	4.4	
		시흥시	105.79	1.0	322,644	2.5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광명시	38.53	0.4	326,841	2.5	
		군포시	36.42	0.4	276,916	2.1	
		하남시	92.99	0.9	254,415	1.9	
		의왕시	53.99	0.5	153,932	1.2	
	과천시	35.87	0.4	58,142	0.4		
	북부	소계	429.78	4.2	1,888,997	14.4	
		고양시	268.08	2.6	1,044,189	8.0	
		남양주시	46.84	0.5	194,229	1.5	洞지역
의정부시		81.54	0.8	447,026	3.4		
구리시		33.32	0.3	203,553	1.6		
성장관리권역	계	5,189.84	50.9	5,004,224	38.3		
	남부	소계	2,391.29	23.5	3,681,077	28.1	자연보전권역외 전지역
		용인시	288.3	2.8	829,365	6.3	
		안산시	155.64	1.5	660,343	5.0	
		화성시	693.92	6.8	758,722	5.8	
		평택시	458.26	4.5	495,642	3.8	
		시흥시	32.87	0.3	126,043	1.0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김포시	276.6	2.7	423,170	3.2	
		오산시	42.72	0.4	220,070	1.7	
	북부	안성시	442.98	4.3	167,722	1.3	자연보전권역 외 전지역
		소계	2,798.55	27.5	1,323,147	10.1	
		남양주시	216.37	2.1	362,813	2.8	특별대책지역 외 읍·면지역
		파주시	673.21	6.6	451,848	3.5	
		양주시	310.34	3.0	216,951	1.7	
		포천시	826.65	8.1	150,676	1.2	
동두천시		95.66	0.9	96,226	0.7		
연천군	676.32	6.6	44,633	0.3			
자연보전권역	계	3,830	37.6	1,214,930	9.3		
	남부	소계	2,791.83	27.4	1,027,226	7.9	특별대책지역 등
		용인시	302.98	3.0	205,761	1.6	
		광주시	430.99	4.2	363,782	2.8	
		이천시	461.4	4.5	214,206	1.6	
		안성시	110.42	1.1	15,857	0.1	일죽면, 죽산면일부, 삼죽면일부
		여주시	608.31	6.0	111,525	0.9	
		양평군	877.73	8.6	116,095	0.9	
	북부	소계	1,038.17	10.2	187,704	1.4	
		남양주시	194.9	1.9	124,786	1.0	특별대책지역(화도·수동·조안)
가평군		843.27	8.3	62,91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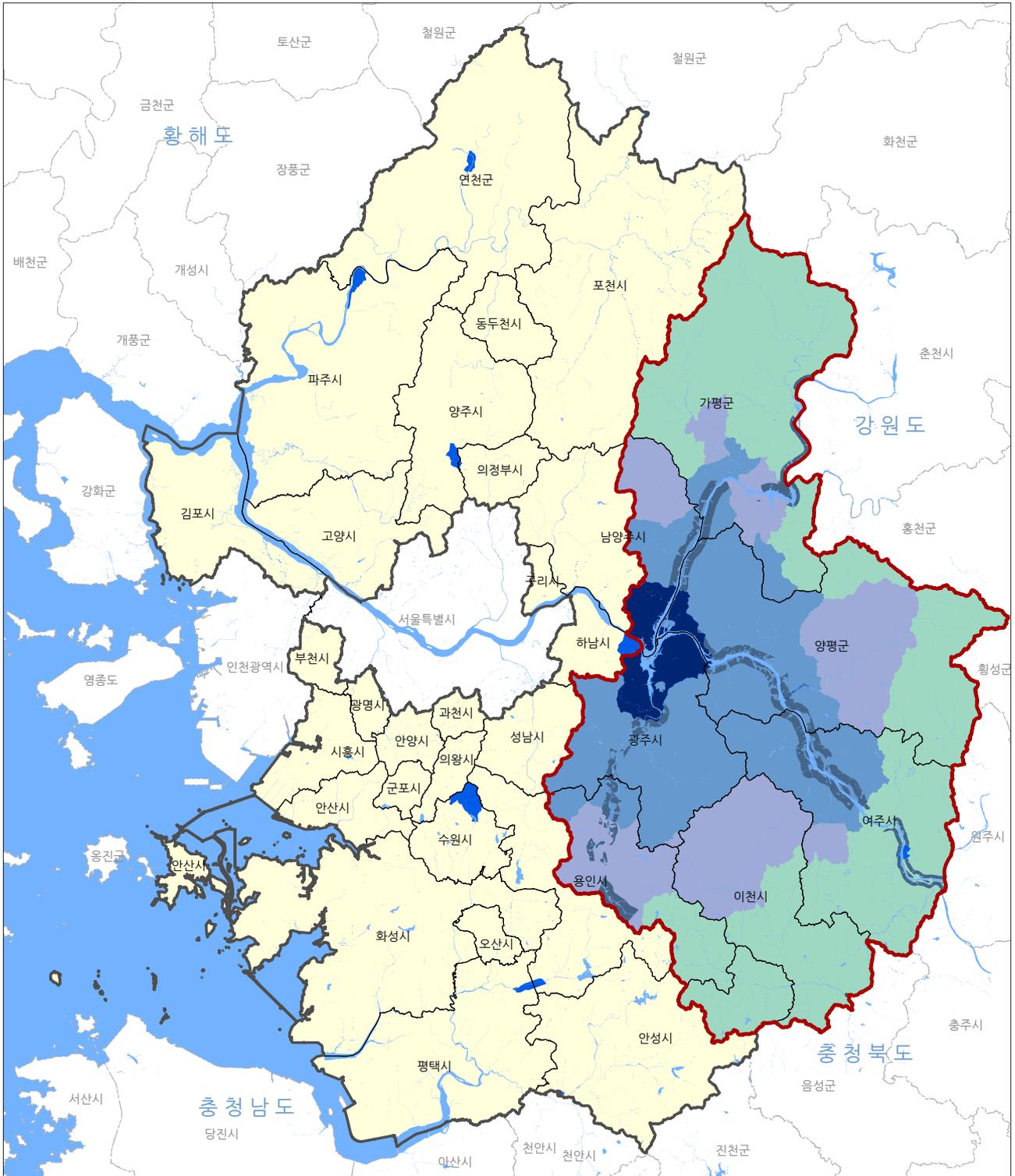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지적통계」, 「주민등록인구」

\* 경기도 전체현황 대비 지역별 비중

# 팔당유역 규제현황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sup>1)</sup>		특별대책지역(2,097km <sup>2</sup> ) <sup>2)</sup>		수변구역 <sup>3)</sup>
	팔당	기타	I 권역	II 권역	
면적	합계: 190,248km <sup>2</sup> 158,817km <sup>2</sup> ('75년 7월)		1,272km <sup>2</sup> ('90년 7월)	825km <sup>2</sup> ('90년 7월)	145.3km <sup>2</sup> ('99년 9월)
대상지역	남양주·하남·광주·양평 일부	수원·평택·의정부·파주·포천·여주·양평·연천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공장	입지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b>입지불허</b>. (단, 원폐수가 수생태법 별표 13의2 기준 미만 시 입지가능)</li> <li>200m<sup>2</sup>/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b>입지불허</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b>입지불허</b>. (단, 원폐수가 수생태법 별표 13의2 기준 미만 시 <b>입지가능</b>)</li> <li>기타시설은 BOD 3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시 <b>입지허용</b></li> </ul>	입지불허
숙박업	입지불허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방류 시 입지가능</li> </ul>
음식점	입지불허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방류 시 입지가능</li> </ul>
축산시설	입지불허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입지가능</li> </ul>
양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지불허</li> <li>· 허가를 받은 자양·연승어업 가능</li> </ul>	·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b>연장불허</b>	·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b>연장불허</b>	·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b>연장불허</b>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유·도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규면허·허가·신고(증설포함) 불허</b></li> <li>단, 주민교통목적 도선업 가능</li> </ul>	입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지허용</b></li> <li>(특별대책지역 I 권역 불허)</li> </ul>
일반건축물	주택(신축) (100m <sup>2</sup> 이하, 영농 및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30명 이상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30명 이상 노인 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b>입지불허</b></li> <li>-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 방류 시 입지 가능</li> </ul>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b>입지불허</b>.</li> <li>단,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b>입지불허</b>.</li> <li>단,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li> </ul>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골프장·골프연습장	입지불허		· <b>입지불허</b> (’95.2.9.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 용량 저류지 구비 시 <b>골프장 입지허용</b>.</li> <li>단,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은 저감시설 설치 후 가능</li> </ul>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광물채굴·채석	입지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li> </ul>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집단묘지	입지불허		·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b>신규입지 불허</b>	·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b>신규입지 불허</b>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li> <li>2)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li> <li>3) 수변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li> </ol>				

# 팔당유역 규제도



**범례**

- 팔당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자연보전권역



축적 : 1/750,000



# 팔당유역 규제현황

**참고 7**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권역별 행위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구분		I 권역	II 권역
오수 배출 시설 (제5조)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연면적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숙박업·식품접객업 400㎡ 이상) 금지</li> <li>※ 비오수배출시설 허용하되, 동일건축물에 오수배출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총 건축연면적으로 기준적용</li> </ul>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li> <li>공공복리시설<sup>1)</sup>(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sup>2)</sup>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li> <li>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환경부장관 동의 후)</li> <li>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규제제한 없음<sup>3)</sup></li> <li>※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sup>2)</sup> 적용하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 허용</li> <li>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수변구역 제외)에서는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적용 제외</li> <li>※ 단, “I 권역”의 경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 허용<sup>4)</sup></li> </ul>	
폐수 배출 시설 (제6조)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시설 금지 (※ I 권역의 농림지역 행위제한은 고시 [별표3] 제3호<sup>5)</sup> 적용)</li> </ul>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D 30mg/L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는 경우</li> <li>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li> <li>도로·철도 건설 위한 터널공사로 인해 임시 설치 경우</li> </ul>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제6조)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기준<sup>6)</sup>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금지</li> </ul>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지역 내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중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li> <li>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sup>7)</sup>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sup>8)</sup>을 설치하는 경우</li> <li>※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li> <li>-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또는 설치(변경)신고한 후 설치·운영 중인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2월 24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li> <li>※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sup>9)</sup>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li>- 2일 이상 저류시설(폐수)을 설치하는 경우</li> </ul> </li> <li>⇒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li> <li>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li> <li>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li> <li>※ 단, 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주6)”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li> </ul>	

# 팔당유역 규제현황

구분		I 권역	II 권역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제6조)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9월 22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게 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li> <li>“주9)”의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li> <li>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설치·운영하는 경우</li> <li>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를 수질원경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경우 (1~3종사업장에 한함)</li> <li>투입물질이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li> <li>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는 경우</li> <li>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물을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li> <li>“주9)”의 엄격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li> </ul> </li> </ul>
가축분뇨배출시설 (제7조)	행위제한	•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sup>10)</sup> 금지	
	완화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에서는 입지 가능 (단, 수변구역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제8조)	행위제한	• 폐기물처리시설 <sup>11)</sup>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금지	
	완화	• 관할구역내 발생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포함)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 한 사료를 제조(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			
골프연습장 (제12조)	행위제한	• 천연잔디 골프코스 골프연습장의 신설·증설 금지	• 천연잔디 골프코스 골프연습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9]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할 경우 가능
		※ 골프장의 입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sup>12)</sup> 에 따름	
집단묘지 (제14조)	행위제한	• 공설묘지·사설묘지 <sup>13)</sup> 의 신규입지 금지	

주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1](공공복리시설) : 관공서, 공공교육기관, 도서관, 금융기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 농·임·축산업협동조합 생산물 가공·저장시설, 마을공동시설, 취·정수시설,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세부내용 별표1 참조

주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총인(mg/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특정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주 3)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4](1 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주 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4](1 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1호

주 5) I 권역에서 농림지역의 경우 다음의 입지기준을 적용함(「특별대책 고시」 [별표3]의 제3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 금지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주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관련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유기인 화합물	0.0005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	0.0005	1,1-디클로로에틸렌	0.03	염화비닐	0.005
납과 그 화합물	0.01	6가크롬 화합물	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1,2-디클로로에탄	0.03	아크릴로니트릴	0.005
비스와 그 화합물	0.01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벤젠	0.01	클로로포름	0.08	브로모포름	0.03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사염화탄소	0.002	1,4-다이옥산	0.05	페놀	0.1
시안화합물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0.008	펜타클로로페놀	0.001

주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주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주 9)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하는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정하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으로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으로 정하며, 그 기준은 "주6)"과 같음

주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주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주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주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및 제14조제1항제4호(사설묘지)

# 팔당유역 규제현황

특별대책지역 : 2,097km<sup>2</sup>

- 7개 시·군 : 남양주, 광주, 용인, 여주, 이천, 양평, 가평

- I 권역 1,271.60km<sup>2</sup>, II 권역 824.86km<sup>2</sup>

- 전국 특별대책지역 면적(2,796km<sup>2</sup>)의 75% 차지

[2018.12.31. 기준]

시·군	권역구분	행정구역	면적(km <sup>2</sup> )	인구(명)
전체 (5시2군)	합계	22동7읍31면	2,096.46	998,680
	I 권역	3동6읍18면	1,271.60	608,445
	II 권역	19동3읍17면	824.86	390,235
남양주시	계	1읍2면	194.92	123,375
	I 권역	1읍1면	111.32	106,902
	II 권역	1읍1면	83.6	16,473
용인시	계	4동1읍2면	207.34	193,104
	I 권역	1읍	50.36	27,969
	II 권역	4동1읍1면	156.98	165,135
이천시	계	15동1읍5면	233.02	172,019
	I 권역	-	-	-
	II 권역	15동1읍5면	233.02	172,019
광주시	계	3동3읍4면	430.96	358,371
	I 권역	3동3읍4면	428.04	358,070
	II 권역	1면	2.92	301
여주시	계	5면	247.62	24,868
	I 권역	5면	217.64	22,291
	II 권역	1면	29.98	2,577
가평군	계	4면	190.89	20,491
	I 권역	2면	91.29	13,292
	II 권역	4면	99.6	7,199
양평군	계	1읍10면	591.71	106,452
	I 권역	1읍6면	372.95	79,921
	II 권역	4면	218.76	26,531

상수원보호구역 : 190km<sup>2</sup>

- 14개 시·군 : 수원, 용인,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연천
- 11개 구역 190,248km<sup>2</sup> (팔당지역 1구역 158,817km<sup>2</sup>, 일반지역 10구역 31,431km<sup>2</sup>)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면적(1,165km<sup>2</sup>)의 16.3% 차지

[2018.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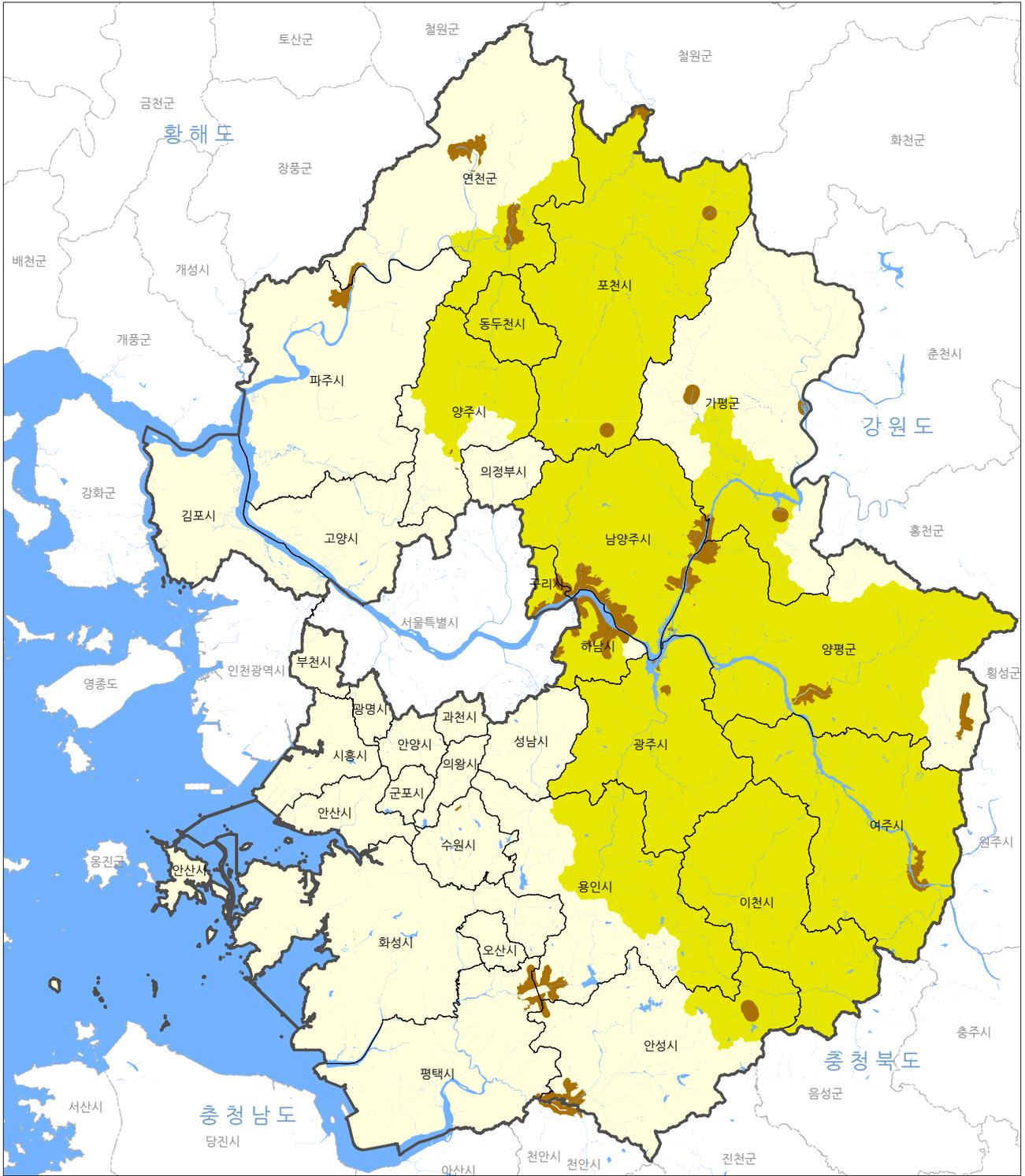
구역명칭	시·군	행정구역	지정일 (변경일)	면적(km <sup>2</sup> )	관련 취수장
합계	14개	-	-	190,248	-
① 팔당	하남시	하남시 배알미동	'75.07.09	7,100	수도권1, 2, 3 (수공)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등	'75.07.09	42,378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등	'75.07.09	83,626	광주, 광주 용인 공동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등	'75.07.09	25,713	
② 문산	파주시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92.12.14	4,810	금파
③ 여주	여주시	여주군 여주읍, 강천면	'88.12.15	2,347	여주, 이천
④ 군남	연천군	연천군 군남면	'95.05.19	2,833	연천
⑤ 포천	포천시	포천시 관인면	'92.08.10	0,332	관인
⑥ 양평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95.06.30	0,542	양평통합
⑦ 가능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3동,	'82.05.25	0,347	가능
⑧ 광고	양주시	양주시 백석읍	'71.06.10	3,526	광고
⑨ 파장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81.06.26	10,277	파장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577	
⑩ 송탄	평택시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등	'79.03.09	2,287	송탄
	용인시	용인시		1,572	
⑪ 평택	평택시	평택시유천동	'79.07.02	0,025	유천
	안성시	안성시 공도면 중보리 등		0,956	

# 팔당유역 규제현황

**참고 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 「수도법」

구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sup>1)</sup>	공장설립 제한지역 <sup>2)</sup>	
		공장설립 승인지역 <sup>3)</sup>	
지정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 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 ○취수시설 용량이 20만 m <sup>3</sup> /일 이상인 경우, 보호 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 거리 20km 이내 지역	○보호구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4km~7km(하천·호소 경계로 부터 500m이내 제외) ○보호구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
지정현황	(임진강) 동두천, 양주(일부), 연천(일부) (한 강) 구리, 남양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일부), 양평(일부), 하남(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임진강·한강 유역) 포천시(전지역)	연천(일부), 파주(일부), 포천(일부), 양주(일부), 광주(일부), 양평(일부), 여주(일부), 남양주(일부), 구리(일부), 가평(일부), 하남(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평택(일부), 수원(일부)	
폐수 배출 시설	행위 제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금지 원칙	○공장 설립 금지
	완화	○특별대책지역 내 도시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 외에서 일부시설(출판·인쇄 등 시설, 이·화학시험시설, 군사시설 등) 중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 구역 외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 생략(세부사항 고시 참조)	○공장 설립 금지
기타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제2조, 제3조,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제2조, 제3조 2)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3)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호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도



## 범례

- 공장설립제한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축적 : 1/750,000



# 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구분	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p>목적 (법 제1조)</p>	<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ul>
<p>행위제한 (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li> </ul>
<p>행위제한 완화 (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시 가능한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 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li> <li>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li> <li>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li> <li>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li> <li>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li> </ul> </li> <li>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li> <li>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li> <li>3)의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li> <li>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li> <li>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규모이상의 죽목(竹木) 벌채</li> <l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li> <li>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놓는 행위</li> <li>1)호 또는 존속중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li> <li>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垸)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1)호마목에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li> </ol> </li> <li>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 허가대상 행위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만 행위 허가 가능</li> <li>경미한 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시행규칙 별표4)</li> <li>다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li> <li>- 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li> </ul> </li> <li>(단, 경작을 위한 경우는 1만㎡ 이상)</li> </ul> </li> </ul>

※ 자료출처 : 2016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2016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 범례

■ 개발제한구역



축적 : 1/750,000



# 개발제한구역 현황

- 21개 시·군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의왕, 양평, 과천
-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km<sup>2</sup>)의 30.3%, 도 면적의 11.5% 차지

[2018.12.31 기준]

구분	면적(km <sup>2</sup> )				인구(명)			
	행정구역 면적	GB면적	행정구역 대비(%)	전체GB 대비(%)	행정구역 주민등록인구	GB 주민수	행정구역 대비(%)	전체GB 대비(%)
합계	4,948.59	1,166.98	23.6		11,045,830	57,615	0.5	
경기남부	3,797.20	668.84	17.6	57.3	8,452,283	23,705	0.3	41.1
수원시	121.04	32.23	26.6	2.8	1,201,166	933	0.1	1.6
용인시	591.28	3.6	0.6	0.3	1,035,126	-	-	-
성남시	141.64	48.58	34.3	4.2	954,347	506	0.1	0.9
부천시	53.44	16.23	30.4	1.4	843,768	650	0.1	1.1
안산시	155.64	37.82	24.3	3.2	660,343	1,280	0.2	2.2
화성시	693.92	91.37	13.2	7.8	758,722	4,002	0.5	6.9
안양시	58.46	29.53	50.5	2.5	576,831	429	0.1	0.7
시흥시	138.66	85.85	61.9	7.4	448,687	4,113	0.9	7.1
김포시	276.6	16.99	6.1	1.5	423,170	1,459	0.3	2.5
광명시	38.53	15.08	39.1	1.3	326,841	820	0.3	1.4
광주시	430.99	104.36	24.2	8.9	363,782	972	0.3	1.7
군포시	36.42	22.74	62.4	1.9	276,916	205	0.1	0.4
하남시	92.99	71.89	77.3	6.2	254,415	3,697	1.5	6.4
의왕시	53.99	45.68	84.6	3.9	153,932	1,422	0.9	2.5
양평군	877.73	17.14	2	1.5	116,095	660	0.6	1.1
과천시	35.87	29.75	82.9	2.5	58,142	2,557	4.4	4.4
경기북부	1,151.39	498.14	43.3	42.7	2,593,547	33,910	1.3	58.9
고양시	268.08	119.27	44.5	10.2	1,044,189	10,634	1	18.5
남양주	458.11	224.57	49	19.2	681,828	12,749	1.9	22.1
의정부	81.54	57.33	70.3	4.9	447,026	4,437	1	7.7
구리시	33.32	20.5	61.5	1.8	203,553	1,758	0.9	3.1
양주시	310.34	76.47	24.6	6.6	216,951	4,332	2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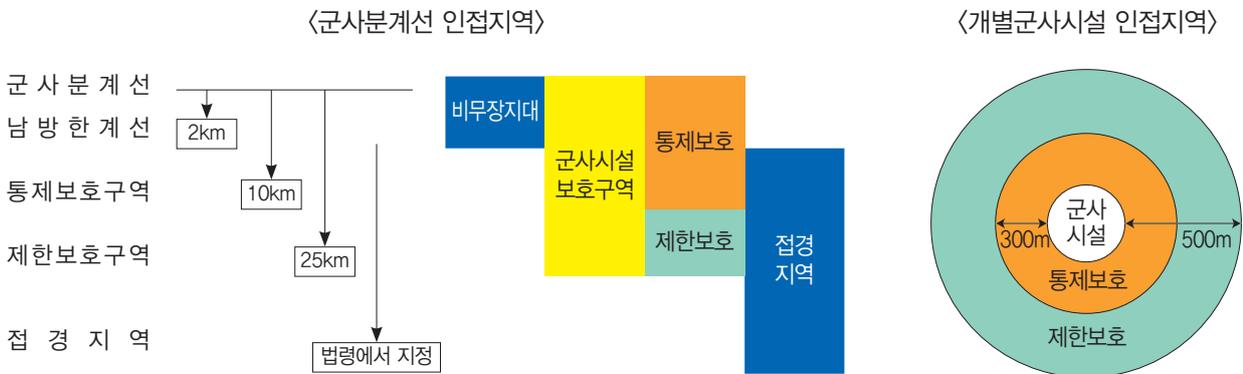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현황

## ■ 법적 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통제보호구역 :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 요구 구역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 군사규제 지정 범위



- ※ 군사 기지별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 (통상의 개별군사시설 : 0.5km)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 → 1km 범위 이내
  - 전술항공작전기지 → 5km 범위 이내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 → 2km 범위 이내
  - 군용전기통신기지 → 반지름 2km 범위 이내

※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변화

구분	'72.12.26.법 제정 (군사시설보호법)	1981년 개정	1993년 개정	1997년 개정	'07.12.21. 법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27km 이내	20km 이내	20km 이내	15km 이내	10km 이내
제한보호구역	(통제·제한 구분 없음)	27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 ■ 행위제한

- 통제보호구역 : 출입, 건축물 신축 원칙적 금지
  - 주택증축,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신증축)은 군부대 동의 시 가능
- 제한보호구역 : 모든 개발행위(군부대 동의 시 가능)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범례**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 접경지역



축적 : 1/750,000



#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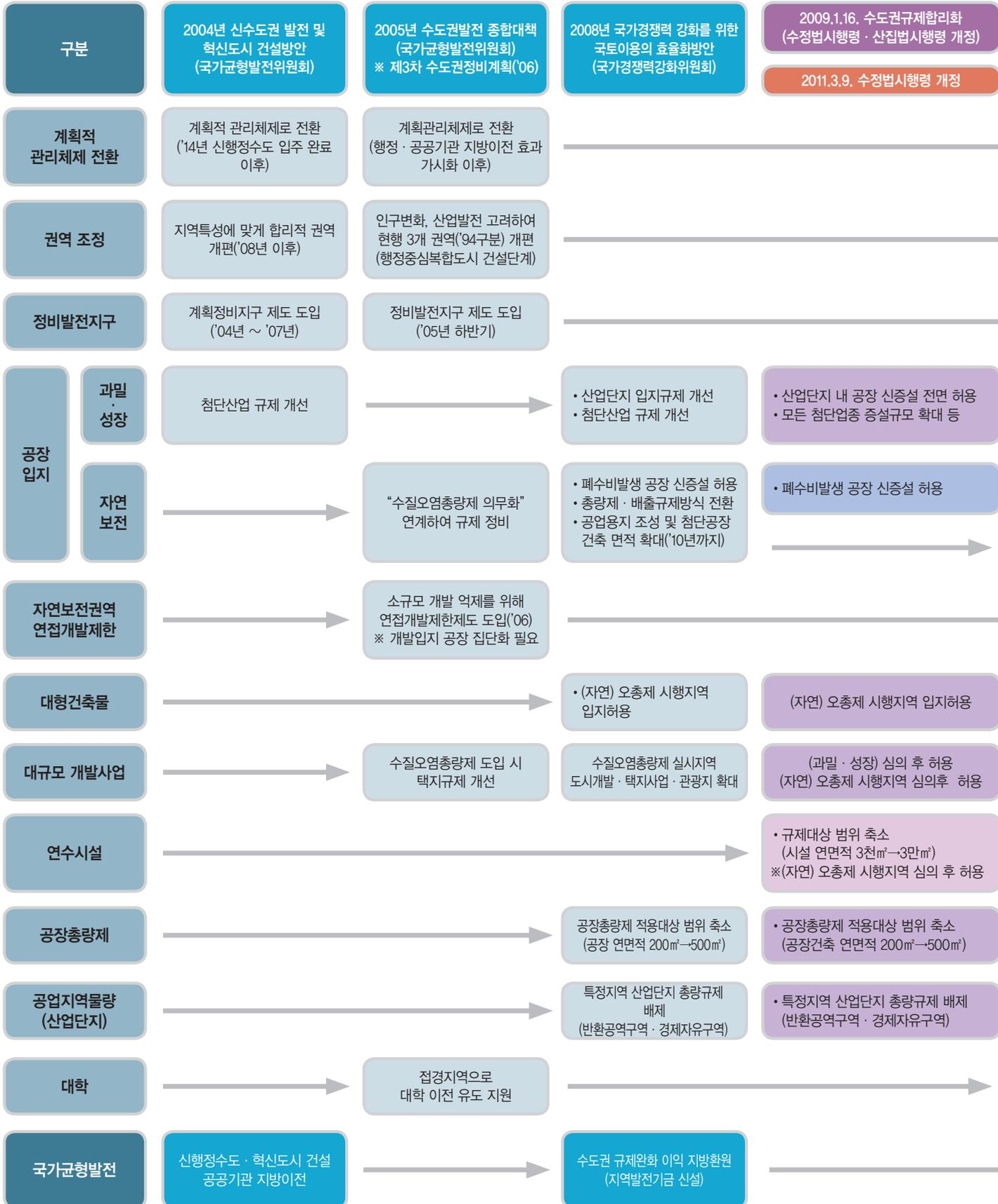
[2018.12.31. 기준]

구 분	행정구역[A] (km <sup>2</sup> )	군 사 시 설 보 호 구 역(km <sup>2</sup> )			
		계[B] (통제+제한)	통제보호	제한보호	보호구역비율[B/A](%)
총계	10,187.79	2,239.20	447.15	1,792.05	21.98
경기남부	5,921.29	445.51	47.26	398.25	7.52
수원시	121.04	0	-	-	0
용인시	591.28	27.81	1.07	26.74	4.7
성남시	141.64	88.5	0.8	87.7	62.48
부천시	53.44	0.05	-	0.05	0.09
안산시	155.64	0.22	-	0.22	0.14
화성시	693.92	5.19	0.66	4.53	0.75
안양시	58.46	8.55	-	8.55	14.63
평택시	458.26	27.03	4.47	22.56	5.9
시흥시	138.66	2.92	0.61	2.31	2.11
김포시	276.6	199.63	36.83	162.8	72.17
광명시	38.53	1.91	-	1.91	4.96
광주시	430.99	6.42	1.98	4.44	1.49
군포시	36.42	0	-	-	0
이천시	461.4	43.46	-	43.46	9.42
오산시	42.72	0	-	-	0
하남시	92.99	5.17	-	5.17	5.56
안성시	553.4	1.98	0.43	1.55	0.36
의왕시	53.99	0	-	-	0
여주시	608.31	3.41	-	3.41	0.56
양평군	877.73	18.42	0.41	18.01	2.1
과천시	35.87	4.84	-	4.84	13.49
경기북부	4,266.50	1,793.69	399.89	1,393.80	42.04
고양시	268.08	104.96	-	104.96	39.15
남양주시	458.11	43.28	-	43.28	9.45
의정부시	81.54	26.5	-	26.5	32.5
파주시	673.21	600.53	159.3	441.23	89.2
양주시	310.34	145.91	1.75	144.16	47.02
구리시	33.32	9.64	-	9.64	28.93
포천시	826.65	184.84	0.84	184	22.36
동두천시	95.66	9.58	-	9.58	10.01
가평군	843.27	28.13	0.55	27.58	3.34
연천군	676.32	640.32	237.45	402.87	94.68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내용 〉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245.29km<sup>2</sup> ('08~'18)

# 수도권 규제 개선 진행 상황



2012년 정부정책 (위기관리대책회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재 상황	전망 및 개선방향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및 과밀억제권역 중심의 국토불균형 현상 해소 필요</li> <li>수도권 규제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수도권 개발총량 범위 내 입지규제 완화, 계획적 개발 유도)</li> </ul>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li> <li>팔당상수원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역(특대권역 외 지역)의 권역 조정(자연→성장)</li> <li>인구변화,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과밀·성장 재조정</li> </ul>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지역 중심으로 선별적 규제개선 필요</li> </ul>
		해소	
수질오염방지 제도보완 후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수생태계법 개정 병행)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前 기존공장 증설허용</li> <li>계획입지 유도를 위한 공업용지 허용면적 확대 등</li> <li>2016년 환통법 시행과 병행하여 입지규제 개선</li> </ul>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 연접개발제한 제도 도입 ⇒ 산업 집산화 유도를 위하여 연접규제 제도개선 필요 (계획입지 및 준계획입지 조성 시 연접개발제한 배제)</li> </ul>
		해소	
		해소	
		해소	
		일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지역 공급물량 여유 (‘09~’11 배정물량 45%, ’12~’14 배정물량 93% 집행)</li> </ul>
	(과밀)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일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공급계획 및 특별물량 배정 등으로 일부 해소</li> <li>(과밀)추가공급 불가 ⇒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한 지역 공급</li> </ul>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지역 중심으로 개선 필요(반환공여구역 대학이전 가능)</li> <li>폐수미배출 시설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li> <li>200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도입 (’10년~’19년) 수도권 시·도별 지방소비세 35% 납부</li> </ul>

## 경기도 규제지도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지**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편집제작** 규제개혁담당관

**규제도면** 경기연구원